

교재개발규정

제정 : 2001.08.01

개정 : 2014.11.01

개정 : 2020.03.01

개정 : 2022.12.01

개정 : 2023.1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평생교육과 계속교육이념에 의하여 설립된 본 대학교의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각종 교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대학교 교육목표에 부합되고 효과적인 교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재개발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하여 개발될 수 있는 교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교양과목 교재
2. 전공과목 교재
3. 기타 위의 각 교재를 보조하는 보충교재

제2장 교재개발 위원회

제3조(설치목적과 구성) ① 교재개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교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교무처장,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01., 2020. 03. 01., 2023.10.16.>

④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2.12.01.>

제4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본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재개발(기본)계획 심의
2. 개발 선정된 교재 원고 내용 심의

3. 기타 교재개발에 관한 일반사항

4.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위원회는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1.01.>

제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 대학교의 교원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케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의 교원이 아닌 자로 본회의에 참석한 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재개발 신청 및 연구비 지급

제8조(교재개발 신청) ① 교재개발을 하는 자는 소정의 서식(별지 제1, 2호 서식)에 의거 학과별 교재편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3.10.16.>

② 신청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재개발 심의 및 통보) ① 교무처장은 전조에 의거 신청된 교재개발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2020.03.01., 2023.10.16.>

② 교재내용의 내실을 가하기 위하여 교재개발심의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비 지급) 위원회의 심의결과 개발이 확정된 교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연구비를 구분 지급한다. 단, 연구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총장이 당해 연도의 예산행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교재개발 계획서 승인 후 연구 착수비(1/2)

2. 교재개발 집필결과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제출 후 연구비 잔여금(1/2)

제11조(교재개발 완료기간)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지정일 이내에 교재개발을 완료 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그 개발계획을 변경시키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서식(별지 제 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지연은 1회에 한하고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교재개발 중지 및 교재개발 연구비 반납) 교재개발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개

발 사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 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발사업을 중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미 수령한 교재개발 연구비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장 출판부

제13조(출판부) 본 대학교에 교재개발 및 각종 간행물 등의 발간을 위하여 출판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발행권

제14조(교재발행권) 본 대학교 교재개발 연구비로 개발한 교재의 발행권 및 저작권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장 교재채택기간

제15조(개발교재의 채택기간)교재개발 연구비를 지급받아 개발된 교재는 본 대학교 학습교재로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재편찬위원회) 각 학과는 전임교원 3인 이상 및 산업체 인사 1인 이상으로 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학과별로 운영하여야 한다. 단, 전임교원 3인 이하인 학과는 예외로 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 년도 교재개발 신청서 및 계획서

1. 교재개발 내역

개발구분	교재명	교과목명	이수구분	비고
<input checked="" type="radio"/> 교과서 () <input checked="" type="radio"/> 학습자료	한글 한문 영문		교 선 () 전 필 () 전 선 ()	

2. 개발교재 사용계획

사용계획년도	사용학과	사용년도	사용학기	사용예상기간	비고

3. 교재개발 집필진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전 공
집필책임자					
집 필 진					

4. 집필구분(저, 편저, 공저, 공편저)

5. 예산

총액(만원)	산출내역	비고

* 교재개발 보조금 한도 내 작성

6. 집필개요(상세히)

7. 교재개발 추진일정

교재개발 추진일정	월 별 진행과정	20 년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재를 연구개발함에 있어 상기의 기술에 따라 교재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과 이에 교재개발계획에 대한 모든 방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20 년 월 일

집필책임자 (인)

상기교재를 심의결과 개발교재로 추천합니다.

학과장 (인)

대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교재개발 연구비 신청서

본인은 금번(20 년도)교재개발계획에 의거 교재개발에 소요되는 연구비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개발교재명

한글 :

영문 :

2. 개발구분

교과서 ())

학습자료 ())

3. 교재개발 총액 ()원

4. 신청금액(해당란에 기입)

(1) 개발착수금(신청서승인후) 원

(2) 잔 금 원

20 . . .

신청자 : 개발책임자 직급

성명

(인)

대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20 교재개발 집필 결과보고서

본 보고서를 “ ”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학 과	개발 교재명		
교재개발 참여자	책 임 연 구 원	대 원 대 학 교 조 교 수	○ ○ ○ 인
	공 동 연 구 원	대 원 대 학 교 강 사	○ ○ ○ 인
		대 원 대 학 교 강 사	○ ○ ○ 인
		○ ○ ○ ○ ○ 사 부 장	○ ○ ○ 인
		○ ○ ○ ○ ○ 사 과 장	○ ○ ○ 인
집필결과 개요			
개발비 사용내역 (정산사항)			
활용방안	집필교재 사양	면수 : 사용년월일 : 사용부수 : 사용해당학년 :	
건의사항			

※ 첨부 : 요약문 1부, 개발교재 원본 5부

대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교재개발 변경신청서

개발년도 :

변경년도 :

변경사유 :

상기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집필자 : (인)

학과장 : (인)

대 원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교재 개발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회의장소
참 석 자	산업체측		
	대학교측		
회의안건			
회의내용			
의 결		상기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 업 체 측	대 학 교 측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